

(우) 04373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40 삼구빌딩 8F [http://www.kma.org]/전화(02)6350-6548 / 전송(02)790-8911
보험정책국장 이성민[6574] / 보험팀장 백영기[6581] / 팀원 박수연[6587] / email: kma6350@naver.com

문서번호 대의협 제813-10420호

시행일자 2020. 11. 26.

수 신 각시도의사회장, 각과학회장, 대한개원의협의회장, 각과개원의협의회장

참 조

제 목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 고시 일부개정 안내

1. 관련근거: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-263호(2020. 11. 24.)

2. 위 호 관련,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“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” 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-214호, 2019.9.27.)을 붙임과 같이 개정·고시한 바, 이를 전달해드리오니 귀 회 소속 회원들이 참고하실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: 「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」 개정문 1부. 끝.

대한의사협회장

“국민의 건강과 행복, 의협이 함께 합니다”

